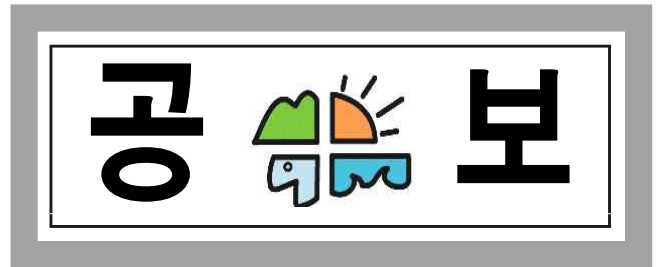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96호 2014년 10월 27일(월)

공 고

○ 공설봉안묘지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공설봉안묘 설치에 따른 『공설봉안묘지 內(내) CCTV 설치』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10월 24일

속 초 시 장

공설봉안묘지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1. 행정 예고할 내용 : 공설봉안묘지 내 CCTV 설치
2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 - 공설봉안묘지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방문객 안전사고 및 봉안묘 도난 등의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시 조속한 조기대응하고자 공설봉안묘지 내에 CCTV 설치장소를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
3. 관련근거
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
 -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4. 행정예고기간 : 2014. 10. 24 ~ 2014. 11. 13까지 (21일간)
5. 의견제출기간 : 2014. 10. 24 ~ 2014. 11. 13까지 (21일간)
6. 공고방법 :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://sokcho.gangwon.kr>)

7. CCTV 설치장소 : 1개소 8대

대 상 지	소 재 지	CCTV	촬영시간	비 고
속초시 공설봉안묘 內(내)	노학동 산155-7(임)	고정 4대	24시간	

8. 의견제출

- 공설봉안묘 內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내에 “붙임”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속초시청 여성가족과(노인복지계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제출자 주소,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), 연락처
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주 소 : 속초시 중앙로 183 (속초시 중앙동 469-6)
- 전 화 : (033)639-2951
- FAX : (033)639-2739
- 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- ※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【 붙임 】 주민의견 제출서

공설봉안묘 內(내)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				
사 업 명	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설치예정장소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공설봉안묘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14년 월 일 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 속 초 시 장 귀하				